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

제정 1986.12. 3	개정 1992. 3. 1	개정 2000. 3.28	개정 2010. 3. 1
개정 1987. 3.24	개정 1994.12.26	개정 2001. 8. 1	개정 2013. 2.28
개정 1989. 1.15	개정 1996.10. 1	개정 2004. 3. 1	
개정 1989. 5.29	개정 1997.12. 1	개정 2006. 3.29	
개정 1989. 7.24	개정 1999. 3. 4	개정 2009. 3.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55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외부장학재단 및 장학금 기부자의 기부조건 등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 학생생활위원회는 장학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
2. 장학생 선발 사정기준
3. 기타 장학금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제2장 장학금의 신청

제4조(신청시기) 장학금의 신청은 학기 초 장학담당부서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복학 등의 학적변동자의 장학금 신청, 시간근로 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28)

제5조(제출서류) 장학금 수혜희망자는 소정의 “장학금신청서”와 장학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부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담당부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제6조(복학생의 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복학생은 복학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았던 학생은 복학 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③ 휴학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복학 시에 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2.28)

제3장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

제7조(장학사정 주관부서 및 주기) 장학사정은 장학담당부서의 장학사정관이 주관 하여 학기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장학금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2.28)

제8조(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 본 대학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의 종류별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장학금

가. 명예장학생: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이나 다른 학생들의 장학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포기하는 학생을 명예장학생으로 선발한다.

나. 지곡장학금: 기본장학금으로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이공계), 대통령과학 장학금 등 정부장학금, 외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곡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2.28)

다. 성적우수 장학금

1) 신입생: 폐지 (개정: 2013.2.28)

2) POSTECH 우수인재육성 장학금: 입학성적이 극히 우수하고, 세계적 과학인재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소정의 인원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3) 경시대회 장학금: 본 대학 주최 경시대회 입상자 중 본 대학 입학 시 경시대회 성적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재학생: 폐지 (개정: 2013.2.28)

5) 성적우수 장학금의 2), 3)은 중복수혜할 수 없으며, 성적우수 장학금의 장학금 계속지원 성적기준은 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지곡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2.28)

6) 성적우수 장학생에 대한 선발인원, 선발기준,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

한다.

라. 근로장학금

1) 학기근로장학금: 학생 개인의 가정경제 여건을 평가하여 그 곤란도에 따라 일정인원을 선발하여 60시간 내외의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시간근로장학금: 근로소요 발생 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월 50시간 이내의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의무 완수 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계절학기 시간근로는 30시간 내외로 한다.

3) Student Mentor Program 장학금: Student Mentor Program에 참여하는 Mentor들에게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4)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장학금: 학부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5) Residential College Advisor 장학금: Master 교수를 보좌하며 각 학생 그룹에 대한 상담과 공동체 생활 등 Mentor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6) 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표본 추출 후 제출된 증빙 서류를 조사, 확인하여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7) 장학생 선발 방법, 지급절차 및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마. 기부장학금: 기부자가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바. 특별장학금: 갑작스런 가정경제 여건의 악화 등 인정할 만한 긴급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학생처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선발절차와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사. 해외연수장학금: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 등은 따로 정한다.

아. 외부장학금 유치 학생 교재비 지원: 장학재단, 기업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유치한 학생에게는 일정금액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28)

2. 교외장학금(개정: 2013.2.28)

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 외부장학금: 정부 외의 기관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교외장학금의 장학금 선발자격, 인원, 장학금액 등 제반 사항들은 지원기관이 제정한 규정 및 지급지침에 따른다. 단,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외부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이중수혜 금지) ① 모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수혜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특별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28)

② 중복수혜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제10조(보전지급) 교외장학금, 기부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액이 등록금액 이하일 때에는 그 차액을 보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제4장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

제11조(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 납입 시 사전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교외장학금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의 제한) ① 학사과정 9학기 이상 재학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복수전공자는 10학기까지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으나 복수전공을 신청한 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추후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근로 장학금,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② 학기근로장학금은 학기말 개인별 근로평가에 따라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평가 A = 지급총액의 100% 지급
2. 평가 B = 지급총액의 80% 지급
3. 평가 C = 지급총액의 50% 지급
4. 평가 D = 전액 미지급, 차기년도 선발 제외

③ 학기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휴학, 제적, 근로포기, 기타의 사유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④ 장학금 수혜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다음 학기의 모든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⑤ 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지곡장학금(동일한 지급기준을 따르는 성적우수 장학금 포함)을 제외한 모든 교비장학금은 직전학기 10학점 미만을 취득하거나 평균점 2.0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간근로장학금,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장학금은 예외로 하고, 교외장학금은 지원기관이 정한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르며, 지곡장학금의 계속지원 조건은 국가장학금(이공계)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2.28)

제13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4년 12월 26일 개정, 1994년 9월 1일부로 소급 시행한다.
2. 다만, 포항공과대학에서 포항공과대학교, 학장에서 총장, 기획실장에서 기획처장으로의 개정은 1994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6학년도 입학자는 재학 중 1회 교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일 개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도 3월 28일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도 3월 29일부로 개정하여 2006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도 3월 24일부로 개정하여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도 3월 1일부로 개정하여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로 개정하여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다만, 학기성적 우수장학금 폐지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